KDS 47 70 10: 2019

건축설계 일반사항

2019년 4월 8일 개정 http://www.kcsc.re.kr







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

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,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건설기준 연혁

-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(설계기준, 표준시방서) 간 중복·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.
-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·개 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.

건설기준	주요내용	제정 또는 개정 (년.월)
철도설계기준(건축편)	* 총칙, 건축계획, 건축설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터널 방재설비, 조경,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*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, 친환경 및 신·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(green building)을 실현 *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,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	제정 (2011.12)
철도설계기준(건축편)	•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 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, 규정,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	개정 (2015.12)
KDS 47 70 10 : 2016	•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	제정 (2016.6)
KDS 47 70 10 : 2019	•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	개정 (2019.04)

제 정 : 2016년 6월 30일 개 정 : 2019년 04월 08일

심 의 :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: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

소관부서 :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

관련단체 : 한국철도시설공단 작성기관 :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목 차

1.	일반사항	1
	1.1 목적	1
	1.2 적용 범위	1
	1.3 참고 기준	1
	1.4 용어의 정의	2
	1.5 기호의 정의	
	1.6 설계고려 사항	5
	1.7 철도건축물의 특성 및 설계방향	
	조사 및 계획	
3.	재료	7
4.	설계	7

1. 일반사항

1.1 목적

KDS 47 70 00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따라 철도건축물(건축기계설비 및 검수시설 포함) 의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이 높고, 미래지향적이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서 효율적인 철도건설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적용범위

- (1)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철도건설법 제18조(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)에 의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.
 - ① 철도 역사(驛舍)
 - ② 철도 물류시설 및 환승시설을 위한 건축물
 - ③ 역사(驛舍)와 같은 대지 내에 있는 판매시설·업무시설·근린생활시설·숙박시설 ·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
 - ④선로보수기지,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내 건축물
 - ⑤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
 - ⑥ 철도기술의 개발·시험 및 연구를 위한 건축물
 - (7)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건축물
 - 8 철도의 건설·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건축물
 - ⑨ 건축기계설비, 터널방재설비 등.
- (2) KDS 47 70 00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.
 - ① KDS 47 70 10 건축설계 일반사항
 - ② KDS 47 70 20 건축계획
 - ③ KDS 47 70 30 건축설계
 - ④ KDS 47 70 40 건축구조
 - ⑤ KDS 47 70 50 건축기계설비
 - ⑥ KDS 47 70 60 터널 방재설비
 - ⑦ KDS 47 70 70 조경
 - ⑧ KDS 47 70 80 검수시설

1.3 참고 기준

1.3.1 관련 법규

- (1) KDS 47 70 00에 적용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.
 - 건축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
KDS 47 70 10 : 2019 건축설계 일반사항

-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
-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
-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-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
- 건설산업기본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
- 도시철도 건설규칙
-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- 소음 진동관리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수도법, 하수도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주차장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지하수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철도건설규칙과 시행규칙
-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철도안전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폐기물관리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환경영향평가법과 그의 시행령, 시행규칙
- KS(한국표준협회)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 지침

1.3.2 관련 기준

- (1) KDS 47 70 00에 적용하는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KDS 34 00 00

1.4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.
 - 건축기계설비: 냉·난방설비, 급·배수설비, 위생설비, 소방설비, 공기조화설비, 환기설비, 승강설비, 자동제어설비, 스크린도어설비 등 건축물 및 터널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를 말한다.

• 건축한계: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.

- 계획설계: 발주자의 사업목표, 소요공간, 예산, 공정과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의 스케치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지분석 자료와 사업방향을 토대로 건축물에 관한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.
- 고속철도: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 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.
- 공사시방서: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·지역여건·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, 자재의 성능·규격 및 공법, 품질시험 및 검사,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하며,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도서가 된다.
- 광역철도: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.
- 구축한계: 전기동차전용선에서 전기·신호·통신·통로·대피장소 및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과 건축한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여유 공간을 말한다.
- 기본설계: 예비타당성조사, 기본계획·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, 배치, 형태, 공사방법 및 기간,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·분석, 비교·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, 설계기준·설계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.
- 기지: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, 차량기지, 주박기지,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.
- 도시철도: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·운영하는 철 도·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.
- 맞이방(대합실, 콘코스): 여객이 승차를 목적으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, 대기, 매표, 정산 등의 접객시설과 안내, 휴게, 매점, 전시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
- 변전건물: 전차선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(변전소, 급전구분소, 보조급전 구분소 등) 등을 말한다.
- 사무소: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(지역본부, 현업사무소, 사업소, 주재 등) 등을 말한다.
- 설계도서: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, 구조계산서, 시방서,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,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,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,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와 건축법제2조 '설계도서'를 포함한다.
- 숙사: 열차승무원 등 철도근무자의 숙박시설을 말한다.
- 승강장: 이용객의 승·하차, 환승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- 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(Shop drawing) :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(시공상 세도면의 작성)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상세도면을 말하며,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도 또는 제작도를 포함한다.

KDS 47 70 10 : 2019 건축설계 일반사항

• 실시설계: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설계기준 등 제반사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형식으로 충분히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.

- 여객시설: 여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맞이방(콘코스, 대합실), 여객화장실 등을 말한다,
- 여객편의시설: 역사 내 매점, 자동판매기, 물품보관함, 여행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.
- 역: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,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,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으로 구분하다.
- ① 보통역: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
- ② 여객역: 여객을 취급하는 역
- ③ 화물역: 화물을 취급하는 역
- 역무시설: 역무실, 매표실, 전산실 등 역사를 운용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역사: 여객이 열차이용을 위한 여객 및 화물 취급에 필요한 여객시설 · 역무시설 · 지원시설 · 화물취급시설 등의 수송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.
- 운전보안시설: 건축법 제3조(적용 제외)의 '운전보안시설'에 따라 열차 운전을 위한 시설 및 관리 • 통제에 필요한 다음의 각 항의 시설을 말한다.
 - 1) 수송원처소, 운전원처소, 열차검수원처소
 - 2) 차량검수관련 처소 및 검수고(동력차, 수송차, 고속차량 등)
 - 3) 신호장, 신호소
 - 4) 전기·통신 및 제어·신호·운전 취급관련 처소, 관제실 및 기계실
 - 5) 변전소, 급전구분소, 보조급전구분소 등
 - 6) 건널목 처소, 경비처소(터널, 교량)
 - 7) 위의 각 시설 합계면적이 연면적의 50% 이상 포함된 복합건축물(단, 여객취급 역사는 제외)
- 일반철도: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.
- 정거장: 여객의 승강, 화물의 적하, 열차의 조성, 차량의 입환,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로서 철도역, 조차장, 신호장을 포함한다.
- 지원시설: 기계실, 전기실, 신호기계실, 통신실 등의 기능실을 말한다.
- 차량한계: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.
- 철도건축물: 철도건설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역사, 승강장지붕, 사무소와 숙소, 차량 기지 및 운전보안시설 등의 건축물(건축물 주변 조경시설, 건축기계설비, 터널방재설비, 철도차량검수시설 포함)을 말한다.
- 통로: 승강장과 역사,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.

1.5 기호의 정의

내용 없음

1.6 설계 고려사항

1.6.1 환경 및 기상조건

- (1) 설계대상 지역의 온도, 풍속, 강우, 적설 등 기상조건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
- (2) 설계대상 지역의 환경조건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3) 실내설비의 환경조건은 온도 및 습도, 소음 및 진동, 공기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6.2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

- (1) 건축한계는 철도건설규칙 제14조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다.
- (2) 건축한계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
1.6.3 시공조건

- (1) 지형 및 지반 조건에 따른 적절한 공법, 시공 가능성, 시공 안전, 지장물 처리계획, 건설장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.
- (2) 열차의 운행에 대한 열차운행현황, 차단현황, 선행공정의 단계별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행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,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7 철도건축물의 특성 및 설계방향

1.7.1 철도건축물의 범위

(1) 철도건축물은 건축기본법제3조에 따른 '건축물' 및 건축법 제2조에 따른 '건축물'에 해당되는 시설물 중 철도건설법 제2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'철도시설'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'승강장의 편의·안전설비' 및 '철도역사의 설치'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며,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.

1.7.2 철도건축물의 용도별 분류

철도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.

- (1) 정거장 건물: 역사, 승강장 지붕, 화물 홈지붕 등
- (2) 사무소 건물: 본사, 지역본부, 현업사무소, 사업소 등의 건축물
- (3) 차량기지 건물: 차량검수시설(동력차, 고속차량, 전기차량, 화차 등)을 위한 건축물
- (4) 운전보안 건물: 관제실, 신호장 및 신호소, 변전건물, 건널목처소, 경비처소 등
- (5) 병원 및 학교 건물: 철도 근무자를 위한 병원과 철도 근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
- (6) 주택 건물: 승무원 숙사, 근무자 숙사, 주박소 등의 건축물

KDS 47 70 10: 2019 건축설계 일반사항

1.7.2.1 철도역사의 구조형식별 분류

철도역사는 구조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.

- (1) 지상역사
- (2) 지하역사
- (3) 선상역사
- (4) 선하역사

1.7.3 철도건축물의 특성

- (1) 철도건축물은 건축물로서의 보편성과 철도와 관련된 특수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.
- (2) 철도역은 복합공간으로서 지역관문의 정체성을 표현하여야 하고, 내외 공간의 교통편의, 효율적인 역무 기능성, 지속 가능한 역세권개발 등의 종합적인 특성이 있다.
 - ①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, 문화생활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공 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 - ② 철도역에서 여객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쉽고 편안하게 환승할 수 있어야 하며, 건물 내부와 광장에도 용도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, 이미지를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역(驛)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역무기능의 집중화로 운영인력을 최소화하며, 각종 설비의 중앙관리 및 통제를 도모하여야 한다.
 - 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물리적, 환경적, 사회문화적인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역사,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도시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.

1.7.4 철도건축물의 설계방향

철도역사(驛舍)를 중심으로 한 철도건축물의 설계방향은 다음과 같다.

1.7.4.1 도시교통의 중심기능 강화

- (1)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
- (2) 적정한 주차장 계획
- (3) 합리적인 도시광장 및 교통광장 계획
- (4) 편리한 우측보행 접근체계 확보

1.7.4.2 도시공간구조 재편성

- (1) 철도역 개발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
- (2) 쾌적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수행
- (3)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도시기능 특성 연계,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 수용 가능성, 쾌적한 도시문화 및 휴게 공간의 확보
- (4) 전면광장의 다용도 도시광장 역할 수행

건축설계 일반사항 KDS 47 70 10: 2019

1.7.4.3 이용의 편리성

- (1) 이용객 접근성 향상 및 인지성 확보
- (2) 여객편의시설의 적절한 배치 및 적정면적 확보
- (3)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및 편의제공
- (4) 장애인, 노약자 및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

1.7.4.4 상징성 부여

- (1)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축계획
- (2) 철도역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형태 및 구조
- (3) 도시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한 정체성(Identity)의 강화
- (4) 역사(歷史)·고도(古都)지구 등 지역적 특성이 강할 경우 역사성, 전통성을 고려한 계획의 다양성 확보

1.7.4.5 기능성 확보

- (1)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이용편의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도모
- (2) 기능별 연계 및 분리, 역무자동화에 따른 효율적 공간 구성
- (3) 지능형건축물의 시설계획

1.7.4.6 지속가능한 계획 및 방향 설정

- (1)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도입
- (2) 지속 가능성의 요인(환경, 사회, 문화 등)을 고려한 시설계획

2. 조사 및 계획

내용 없음

3. 재료

내용 없음

4. 설계

내용 없음

KDS 47 70 10 : 2019 건축설계 일반사항

집필위원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황선근	한국철도기술연구원	신지훈	한국철도기술연구원

자문위원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
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이용수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정혁상	동양대학교
구재동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구자안	한국철도공사
김기현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김석수	㈜수성엔지니어링
김태송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김재복	㈜태조엔지니어링
김희석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소민섭	회명정보통신㈜
류상훈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여인호	한국철도기술연구원
원훈일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성혁	한국철도기술연구원
주영경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승찬	㈜평화엔지니어링
최봉혁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진욱	한국철도기술연구원
허원호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찬우	한국철도기술연구원
		최상철	㈜한국건설관리공사
		최찬용	한국철도기술연구원

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김현기	한국철도기술연구원	최상현	한국교통대학교
이광명	성균관대학교	정광섭	포스코건설
신수봉	인하대학교	손성연	씨앤씨종합건설(주)
이용재	삼부토건(주)		

국토교통부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임종일	철도건설과	홍석표	철도건설과
문재웅	철도건설과		

KDS 47 70 10: 2019

건축설계 일반사항

2019년 04월 08일 개정

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

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

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

Tel: 1588-7270 http://www.kr.or.kr

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Tel: 031-460-5000 http://www.krri.re.kr

국가건설기준센터

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(대화동)

Tel: 031-910-0444 E-mail: kcsc@kict.re.kr

http://www.kcsc.re.kr